

강원도립대학교 학생 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

(제정) 1998-06-19 규정 제029호
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97호
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53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6조에 의한 학생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원내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도교수) 학생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3조(학생단체의 조직) ① 학생 과외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.

② 조직된 단체는 조직목적 및 대표 등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단체의 등록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
1. 학생 단체 활동 등록신청서 1부.
2. 지도교수의 단체결성 승낙서 1부
3. 임원 및 회원명단 1부
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
5. 회칙 또는 규약 1부
6. 단체장 학적부 사본 1부

제4조(조직의 성격) ① 조직된 학생단체의 활동은 학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② 학생 단체는 이 대학 학생회 조직 하에 두며, 활동은 학생회 설치이념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(학생단체의 해산) 총장은 학생단체가 학칙 제39조에 규정된 활동을 하거나 학생 본연의 자세를 이탈하였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제6조(변경신고) 학생단체 대표는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7조(집회의 신고)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·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 5일 전에 학생집회 행사 신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② 학과별 행사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신고한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에는 총장이 학생집회를 취소 요구할 수 있다.

③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할 때에는 외부인사 인적사항과 함께 학생집회 행사신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단체여행) 학생이 단체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행목적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제9조(후원요청 등) 학생활동에 있어서 각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게시공고) ① 학생이 공고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

다. <개정 2016.4.25>

② 외부인이 대학내에 게시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4.25>

③ 학생이나 학생단체에서 학내·외의 작품 등을 게시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6.4.25>

제11조(게시장소) 게시장소는 지정된 게시판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장소에 한한다.

제12조(게시기간) 게시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시설이용) 학생이 학내시설 및 교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사항에 따라 학교에 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4조(시설관리책임) 시설 및 교구 사용 중 파손 또는 손실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5조(시설변경)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교구에 대한 가공을 하지 못한다.

제16조(벌칙)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에 의거 처벌 한다. <개정 2016.4.25>

부 칙(1998. 6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9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